자금세탁 방지 및 내부 통제체계지침

(2019년 6월 28일 개정)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체계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정금융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GME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GME 전 직원에 적용 된다.

제2장 내부통제 구축

제1절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제4조(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 1.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정책과 지침 마련에 대한 감독과 승인
- 2.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한 감사 또는 독립적 감사실시에 따른 감사결과 평가 및 조치
- 3. AML 업무 전반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게 하고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받 아 검토한 후 조치에 대한 승인

제5조(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 1.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 · 운영 · 평가 및 감독
- 2.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규정 승인
- 3. 내부통제 정책의 준수책임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 4. 내부통제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할 책임
- 5. 사기거래 방지를 위한 정책 설정 및 이행과 관련한 승인
- 6. 자금세탁방지등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일정 직위 이상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 및 그 임면사항의 금융정보분석원장 통보 등

제6조(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 1. 보고책임자는 의심되는 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다.
- 2. 보고책임자는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3.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① 관련 규정 및 세부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 ② 직무기술서 또는 관련규정 등에 임직원별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 및 보고체계 등 명시
- ③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

에 대한 검토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④ 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 ⑤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⑥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책임
- ⑦ 자금세탁방지등의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보완
- ⑧ 자금세탁방지등 시스템·통제활동의 운영과 효과의 정기적 점검결과 및 그 개선사항의 경영진 보고
- ⑨ 금융거래 규모 등 자체 여건을 감안한 전담직원 배치
- ⑩ 기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 5. 보고책임자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다.
- 6. 제5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문서에 의해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
- ② 의심되는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한 내부보고체계 운용상황의 점검·개선사항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정보교환 등

제2절 교육 및 연수

제7조(교육 · 연수 실시 등)

- 1. 보고책임자는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 2.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2시간이상) 실시한다.

제8조(교육내용)

- 1. 교육 및 연수는 직위 또는 담당 업무 등 교육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여 실시한다.
- 2.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①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 ②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내부정책 및 절차
- ③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및 최근 동향
- ④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 ⑤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절차
- ⑥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임직원의 역할 등

제9조(교육방법 등)

- 1. 교육 및 연수는 집합 · 전달 ·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2.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 그 일자 · 대상 · 내용 등을 기록 · 보존한다.

제3절 직원알기제도

제10조(정의)

직원알기제도란 자금세탁행위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직원알기제도의 절차이행)

보고책임자는 직원알기제도 이행을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 1.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신원확인시의 신원정보는 아래 와 같다.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함
- ③ 실명번호
- ④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 ⑤ 주소 및 연락처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2. 재직 중인 직원도 필요시 신원확인을 재 확인 해야 한다. 이때 1항 3호, 4호, 5호에 대한 신원 정보를 추가한다.

제4절 독립적 감사체계

제12조(정의)

현재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 효과성을 검토 · 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말한다.

제13조(주체)

GME는 제12조에 따라 현재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장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하고 이사회는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한다.

제14조(주기)

감사는 독립적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점에 대해서는 감사주기를 따로 정하다.

제15조(방법 및 범위)

- 1. 독립적인 감사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점에 대해서 실지감사 · 서면 · 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 2. 독립적 감사는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 · 평가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① 자금세탁방지등 관련정책, 절차 및 통제활동 등의 설계 · 운영의 적정성 및 효과성
- ② 자금세탁방지등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정성
- ③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 등

제16조(결과보고 등)

감사 제 1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범위 · 내용 · 위반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 · 관리한다.

제5절 신상품 등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제17조(절차 수립)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이 '자금세탁등'이라 한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

록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제6절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평가

제18조(종합평가)

매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의 금융기관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현황 등에 대한 GME의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점검한다.

제19조(자가평가)

- 1. 자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 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2. 금융정보분석원에 분기별 점검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장 고객확인

제1절 위험 평가

제20조(위험 평가)

- 1.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한다.
- 2.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험을 반영한다.
- ① 국가위험
- ② 고객유형
- ③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 3. 해당 고객의 자금세탁등의 위험도가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한다.
- 4. 위험기반접근법(RBA)관련한 사항은 별첨자료와 같이 구축 및 이행한다.

제21조(국가위험)

- 1. 특정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등의 위험 (이하 '국가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한다.
- 2. 제1항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다.
- ① FATF가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
- ② FATF Statement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 ③ UN 또는 타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 된 국가리스트
- ④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등

제22조(고객유형 평가)

- 1.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한다. 이 경우 고객의 직업(업종) · 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한다.
- 2.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고려한다.
- ①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금융기관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

다고 판단한 고객

- ②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 ③ 비거주자
- ④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등
- ⑤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 ⑥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 ⑦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에 포함된 자
- ⑧ 개인자산을 신탁 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 ⑨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제 23조(상품 및 서비스 위험)

- 1.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하 '상품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 2.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한다.
- ① 환거래 서비스
- ② 비대면 거래
- ③ 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제2절 고객확인 및 검증

제24조(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 1.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 · 운영한다.
- ①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 ② 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Consolidated List of terrorists)
- ③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non-cooperative countries acd territories) 및 FATF Statement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로 발표한 리스트
- ④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 2. 고객이 제 1항에 따른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5조(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

- 1.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심되는 거래보고를 검토한다.
- 2. 이미 거래관계는 수립하였으나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를 검토한다.

제4장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제1절 통칙

제26조(정의)

- 1. 자금세탁등의 고위험군이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2조제2 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타 고위험군에 대한 조치)

자금 세탁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 및 이 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고위험군에 대하여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군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제28조(정의 등)

- 1.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일반적으로 사임 후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정치적 ·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 2. 제1항에 따른 정치적 ·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자
- ② 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관리자
- ③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 ④ 왕족 및 귀족
- ⑤ 종교계 지도자
- ⑥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
- 3. 제1항에 따른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가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혈연 또는 결혼에 의한 친인척
- ②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공식적으로 특별한 금전거래를 수행하는 자

제29조(확인 절차)

고객 또는 실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0조(고위경영진의 승인)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는다.

- 1.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거래의 수용
- 2.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또는 실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경우 그 고객과 거래의 계속 유지

제31조(강화된 고객확인)

고객 (또는 실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때에는 [고객확인의무취급지침의 제12조부터 15조 및 제2장]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재산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1. 계좌에 대한 거래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신원정보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정보

제32조(모니터링)

- 1.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제3절 FATF 비협조국가

제33조(정의)

FATF 비협조국가란 다음 각 호의 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한다.

- 1.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 2. FATF Statement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제34조(거래목적 확인 등)

- 1.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명확한 경제적 또는 법적 목적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조사한다.
- 2.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공한다.

제35조(대응조치)

- 1.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①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 ②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의심되는 거래보고 체계 등 강화
- 2.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다.

제4절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

제36조(정의 등)

- 1.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 ②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 2.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와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절차는 각 호와 같다.
- ① 거래체결전에 해당자가 있는 부분을 스크린한다.
- ② 스크린결과 발견된 인물이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지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수행한다.
- ③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 아닌 경우 경영진의 확인하에 거래를 진행한다.
- ④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 경우 거래를 증거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STR보고를 한다.

제37조 (강화된 고객확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제한대상 자로서 같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금융거래를 하 는 때에는 [고객확인의무취급지침의 제12조부터 14조 및 제2장]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한 다.

제5장 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체계

제38조(거래모니터링체계 범위)

- 1.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한다.
- 2. 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 ①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방법 등
- ② 거래점검 결과 분석 및 보고
- ③ 분석자료 보존절차

제39조(비정상적 거래 등)

- 1.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한 경제적 · 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 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① 거래금액이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 ② 잔액 규모에 비해 거래건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 ③ 거래가 정상적인 계좌활동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
- 2. 제1항에 따른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해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한다.
- 3.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록 · 관리한다.
- 4. 비정상적인 거래(STR)에 대한 추출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회차 이상거래가 이뤄진 경우 점 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며 연1회 점검하고 추출패턴이 추가적으로 필요 한 경우 이를 추가한다.
- ① 동일송금인이 다수의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10人)
- ② 다수의 송금인이 동일한 단일 수취 앞으로 송금하는 경우 (5人)
- ③ 송금인과 수취인의 국적이 다른 경우

제40조(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절차 등)

자금세탁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 등과 같은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 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 등을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1. 고객의 수집 · 정리된 정보 또는 유사한 고객그룹의 수집 · 정리된 정보와 고객의 거래이력 비교 및 검토
- 2. 과거 자금세탁 사례의 정형화를 통한 고객 거래정보와의 비교 및 검토
- 3. 고객 거래정보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및 거래내역 평가
- 4. 고객, 계좌 및 거래정보의 연계를 통한 금융거래 패턴 분석 등

제41조(결과 분석 등)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식별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갖춘다.

- 1.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분석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방법을 검토한다.
- 2. 과거 금융거래, 신용정보, 기타 정보 등을 활용한 거래 분석을 도모한다.
- 3.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고객의 최신 정보 갱신
- 4. 분석결과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5. 분석 완료 후 유사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내용 정보화

제42조(분석자료 보존)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자료를 보존체계에 따라 5년 이상 보존한다.

제6장 보고체제 수립

제44조(보고체제수립)

의심되는 거래등의 보고를 위해 자신의 지점 등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보고체제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한다.

제45조(내부보고체제)

내부보고체제를 아래와 같이 수립한다.

- 1.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점의 지점장에게 보고하고 지점장은 이를 검토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 2.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 3.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발생 사실을 보고서 작성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제46조(외부보고체제)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장 자료 보존

제47조(보존기간)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 · 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한다.

제48조(보존대상)

- 1.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 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 ②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 ③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 ④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 2.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 ②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 3. 내 · 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 ②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 ③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 ④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 4.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①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 · 운영 · 평가와 관련된 자료
- ②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 ③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제49조(보존방법)

- 1. 고객확인 기록과 관련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보존 · 관리한다.
- ①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한다.
- ② 민감한 자료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 2. 보고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한다.
- 3.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한다.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시에 제공한다.

제50조(보존장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에 보존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하다.

제51조(자료제공의 요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거나 제공받은 사항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의 요건을 확인하여 자료제공 요청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1. 거래자의 인적사항
- 2. 사용 목적
- 3. 요구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제52조(정부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 · 검사 등)

- 1.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금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라 우리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소속공무원과 공식 문서 등을 확인한 후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2.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를 받는 경우 절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 3. GME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지침 제53조,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53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당사 직원들은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직원에게 도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
- 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등이 당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나. 고객자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 다.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 에 필요한 경우
- 5. 동일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 · 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 · 검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 7.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1. 명의인의 인적사항
-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 3. 요구의 법적 근거

- 4. 사용 목적
-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 ③ GME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외국거래소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제54조(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GME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GME는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 ③ GME는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

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GME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55조(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① GME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 4. 제공의 법적 근거
-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 6.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다.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별첨: 위험기반 접근법(Risk Based Approach, R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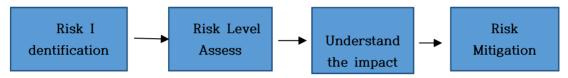
I RBA 시스템의 구축 및 목적

1. 고객의 거래와 관련된 잠재적 자금세탁위험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것에 의하여 지속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위협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고객, 국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계점을 산출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고객확인 방법을 선택한다.

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자원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메커니즘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RBA는 위험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험 또는 위협의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량적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고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실사에 대한 위험 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어를 구현하여 위험 완화 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RBA 결과를 이용하여 CDD, EDD 또는 수행하기 위해 도입될 수 있다. CDD, EDD 또는 단순화된 CDD를 적용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Groundwork for RBA Implementation

Ⅱ 위험에 대한 변수

Country Risk		
Geographic location of sender and beneficiary		
Customer Risk	Service Risk	
Customer backgroundAML system check	Previous relationship	

1. 국가위험(Country Risk)

- ① 적절한 AML/CTF systems를 갖추지 않은 나라
- ② 유엔, EU, OFAC가 발표하는 제재 대상국
- ③ 상당한 수준의 부패 또는 마약, 무기 거래, 인신매매, 불법 다이아몬드 거래 등과 같은 기타 범죄 활동을 하는 국가들.
- ④ FATF에 의해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방지와 관련 비협조로 식별된 국가
- ⑤ 테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출처가 확인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국가 해당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테러 조직을 만든 국가

2. 고객위험(Customer Risk)

- ① 고객의 타입에 따른 위험도(개인고객, 기업고객, 자선단체 등)
- ② 고객에 대한 정보는 출생지, 거주지, 고객의 영업지역, FATF에 의해 분류된 고위험국가와 관련된 고객인지에 대한 구분
- ③ PEPs에 해당되는 고객이나 관련이 있는 고객
- ④ 고객의 직업에 따른 위험

1. 리스크 카테고리 및 스코아링

Categories with details	Risk Scores
Very High Risk:	
 Countries subject to sanctions, embargoes issued by the U.N., EU and OFAC. This includes Senders & Beneficiaries originating from such countries Any Individuals in OFAC, UNSCR or other sanction list e.g. EU sanctions list, FBI sanctions list etc. 	3
High Risk:	
 Countries not having adequate AML/CTF systems Countries having significant levels of corruption or other criminal activities such as narcotics, arm dealing, human trafficking, illicit diamond trading, etc. Countries identified by FATF as non-cooperative in the fight against ML laws & regulations Countries identified by credible sources to support terrorist activities, or have designated terrorist organizations operating within their country Legitimate businesses that can be exposed to financial crimes such as tax evasion, corruption, human and drug trafficking, arm dealing, etc. High net worth Individuals Non Resident customers Jewelers Politically Exposed Person (PEP) Casinos and gambling companies Cash based businesses Unregulated industries, charities, non-profit organizations Dealers in precious metals and stones Dealers in real estate Dealers in luxury goods Auction houses Dealers in second hand / used vehicles Tourists Customers with suspicious behavior 	2
Low Risk:	
 Customers with regular transactions in similar amount intended towards a registered beneficiary to his native country Residents Customers with declared/identifiable source of income and transaction amount justifying the monthly income 1) 	1

2."매우 위험" 범주에 속하는 고객들은 송금신청시 거절해야 한다.

GME는 "높은 위험" 고객에게는 EDD 수행한 후 송금처리할 수 있다.

"낮은 위험" 고객에 대하여는 CDD를 수행한 후 송금처리할 수 있다.

EDD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추가문설ㄹ 정해진 시간내에 제공하지 않을

3. Customer Due Diligence (CDD)

- ① KYC 프로세스에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GME는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모든 고객을 위해 CDD를 수행한다. CDD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유효한 ID, 등록 문서 등을 통한 고객 신원 확인
- 2) 고객의 지역주소, 이동번호, 사무실주소, 소득원, 월소득 추정 등 수집
- 3) 송금 목적
- 4) 고객의 현지 계정 세부 정보(필요한 경우

4. Extended Diligence(EDD)

- ① EDD는 필요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어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지점/준법 책임자는 "고위험" 카테고리 고객으로부터 전송된 거래를 수집 및 분석한 후 신청건을 적절히 처리하거나 거부한다. EDD는 또한 "낮은 위험" 범주 고객에 대해서도 요구될 수 있다. 만약 그가 하루에 이전한 자금이 한계치를 초과한다면 말이다. 예를 들어, 네팔의 경우,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액이 NPR 100만(Approx)을 초과하는 경우. (USD 10,000) EDD 필요하다. EDD는 다음과 같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1) 송금된 자금이 보낸 사람의 은행 계좌에서 나왔음을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
 - 2) GME는 고객이 자신의 소득과 송금목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묻는 설문을 할 것이다.
 - 3)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Google 또는 기타 검색 엔진을 철저히 검색하여 웹에서 발견 한 사람과 관련하여 당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부 사항이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다.
 - 4) PEP의 경우, GME는 자금의 출처를 정립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